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4회 임시회(2020. 10. 27.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0-143
----------	--------

2020. 10. 27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이필레 의원 외 6 인
- 나. 제 안 일 : 2020. 10. 20.
- 다. 회 부 일 : 2020. 10. 20.

2. 제안이유

「지역보건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,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 변경 “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”
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”로 변경
- 나. 조례의 목적을 규정 (안 제1조)
- 다.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(안 제2조~안 제3조)
- 라. 상위법 규정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(안 제3조 관련 별표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역보건법」

2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0. 10. 15.~ 10. 20.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배경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의 과태료 규정사항의 인용 조항 변경과 과태료 부과·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
-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지역보건법」의 인용조항 변경으로 내용 변경 없이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으로 적시·규정하였고
- 현행 조례 제4조이하의 삭제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“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고 규정함에 따라 삭제된 사항임.
- 별표 제3조 관련은 법의 조항 변경에 따라 적시하였고, 기타 별지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등과 관련된 서식을 삭제한 것임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의 변경 없이 법령의 구조적 체계에 맞춘 상위법령의 조항 변경 및 불필요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법령의 구조적 정합성을 갖추었다고 사료됨.

[관 계 법 령]

「지역보건법」

제3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제23조(건강검진 등의 신고) ① 「의료법」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(이하 "건강검진등"이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